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제정이유
 ○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안 제3조, 제4조, 제7조)
 1)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
 2)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둠
 3)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음
 나. 행정협의회 기능 (안 제2조)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3. 규 약 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관련사항 :

성주군 규약 제 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조 (협의회 목적)
본 규약은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②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③ 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④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⑤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지자체는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 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 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또한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③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추가 영입은 협의회 회의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추가 영입하게 한다.

제4조 (의장단 구성 및 선출)
① 의장은 1명으로 한다.
② 의장 선출은 호선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 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 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실시하기로 한다.

③ 협의회 개최지는 시・군별 순회(가나다 --- 순) 한다.

④ 협의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 무 국)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지원은 시・군의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둔다.
4. 협의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 8 조 (경비 부담)

① 본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협의회 시·군별 부담금
2. 기타 수입금
3.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의 지출은 회의 안건 의결에 따라 협의회 운영경비,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사용하며, 협의회 시·군의 재난 발생 시 의장의 판단으로 위문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결산보고는 당해 회의 개시전 기간까지 사용한 재정사항을 결산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 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